

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-5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'99년도 새 주민등록증으로의 일제경신 이후 읍면동에서 주민전산망으로 중앙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하고,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·발급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고,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·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삭제
(안 제2조제1호)
-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의 신설 (안 제2조제6호)
-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의 신설 (안 제2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관계규정 :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3조
- 주민등록사무조례안 개정 시달 통보 [도행정13210-1046(2002.5.1)]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제1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·제44조·제44조의2에 의한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

제2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
7. 규칙 제3조에 의한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</p> <p>1. <u>법 제17조의8 및 영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18조 및 제45조·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에 관한 사항</u> (읍·면·동장도 가능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법 제18조 및 영 제43조·제44조·제44조의2에 의한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규칙 제3조에 의한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</u></p>